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293 발의연월일: 2025. 2. 20.

발 의 자:정일영·정진욱·주철현

임호선 · 김문수 · 윤건영

박해철 • 박용갑 • 남인순

서미화・김 윤・황정아

안도걸 · 송재봉 · 최민희

이훈기 • 임미애 • 권향엽

이광희 • 박홍근 • 이용선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근무시간을 제한하거나 피로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에서 랜딩기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정비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의 정비사 1인당 연간 항공기 정비 대수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비사의 업무 과중과 피로 누적이 정비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로 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를 추가함으로써 항공정비사 확

충을 유도하고 정비부실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제91조제1항 및 제166조제1항). 법률 제 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 운항관리사"를 ", 운항관리사 및 항공정비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항관리사"를 "운항관리사 및 항공정비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항관리사"를 각각 "운항관리사 및 항공정비사"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7호 중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를 "승무원이나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정비사"로 한다.

제166조제1항제1호의2 중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를 "승무원이나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정비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①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①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	
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	
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	
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 <u>과 운항관리</u>	, 운항관리
<u>사</u> 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u>사 및 항공정비사</u>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	1
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	
간, 근무시간 등(이하 이 조	
에서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또는 <u>운항관리사</u> 의 근무시간	운항관리사 및 항공정
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비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	③
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승무원 또는 <u>운항관리사</u> 의 피	<u>운항관리사 및</u>
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무	항공정비사

원의 승무시간등 또는 <u>운항관</u>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취소하여야한다.

1. ~ 16. (생략)

1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 속 <u>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u>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8. ~ 49. (생략)

② (생략)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u>운항관리사 및 항공정비</u> <u>사</u>
,
 1. ~ 16. (현행과 같음) 17
<u>승무원이나 운항관리사 또</u> 는 항공정비사
18. ~ 4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6조(과태료) ①

부과한다.

- 1. (생략)
- 1의2.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u>승무원</u>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 리하지 아니한 자(항공운송사 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 2. ~ 15. (생략)
- ② ~ ⑦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승무원
이나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정
비)사
2. ~ 15.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